

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0-03호

-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-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

화성시 화성시 고시 제2018-641호(2018. 12. 27)로 『도시개발법』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【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】에 편입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상협의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05. 08

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



1. 사업개요
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위 치	보 상 내 역
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	○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며, ○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.

2. 보상계획

- 1)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(다만, 관할 시·도지사 및 물건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물건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(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)
- 2) 보상금 지급방법 : 전액 현금 보상
- 3) 보상시기 : 지장물건(분묘)에 대한 감정평가 후 산정하여 추후 개별통지 예정
- 4) 물건(분묘)소유자(연고자)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(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)
물건(분묘)소유자(연고자)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물건(분묘)소유자(연고자)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사업 시행자 :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

4. 사 업 기 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(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)

5.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

1) 기 간 : 2020. 05. 08(금) ~ 2020. 05. 22(금) (15일간)

2) 장 소

- ①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(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-1 화성공구유통밸리 제2층103동 213-3호) TEL:031)237-7983
- ② 보상사업소(평택시 죽백5로 33, 201호 (죽백동 평택세무타워)) TEL:031)686-9092 / FAX031)686-6117
- ③ 화성시청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TEL:031)369-3777

6. 열 랐 공 고 : 물건(분묘)조서 등 열람 (따로 붙임)

7. 기 타 사 항:

-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,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